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근거 마련 등〉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1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근거 마련 .....         | 3  |
| 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투자 의무 및 업무위탁 .....    | 16 |
| 3.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요건 위반시 행정처분 등 ..... | 20 |
| 4. 창업기획자 투자 의무 인정대상 확대 .....        | 26 |
| 5. 벤처투자모태조합 공시의무 부여 .....           | 30 |
| 6. 벤처펀드 출자 지방자치단체 확대 .....          | 32 |
| ※ 참고자료 .....                        | 3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5.
3. 회부연월일 : 2026. 2.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 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근거 마련

(안 제2조제10호의2, 제37조제4호의2 및 제38조의2 신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펀드운용 자회사로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이하 “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운용전문회사의 정의, 설립요건, 업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10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u> |
| 11. ~ 13. (생략)                                                                        | 11. ~ 13. (현행과 같음)                                                      |
|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 |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br>-----<br>-----<br>-----<br>-----                  |

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신설>

5. ~ 8.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① 벤처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  
조합운용전문회사는 설립 후에  
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하  
나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벤처투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  
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  
무를 할 수 없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  
무의 집행

2. 제1호의 업무에 딸린 사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  
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  
문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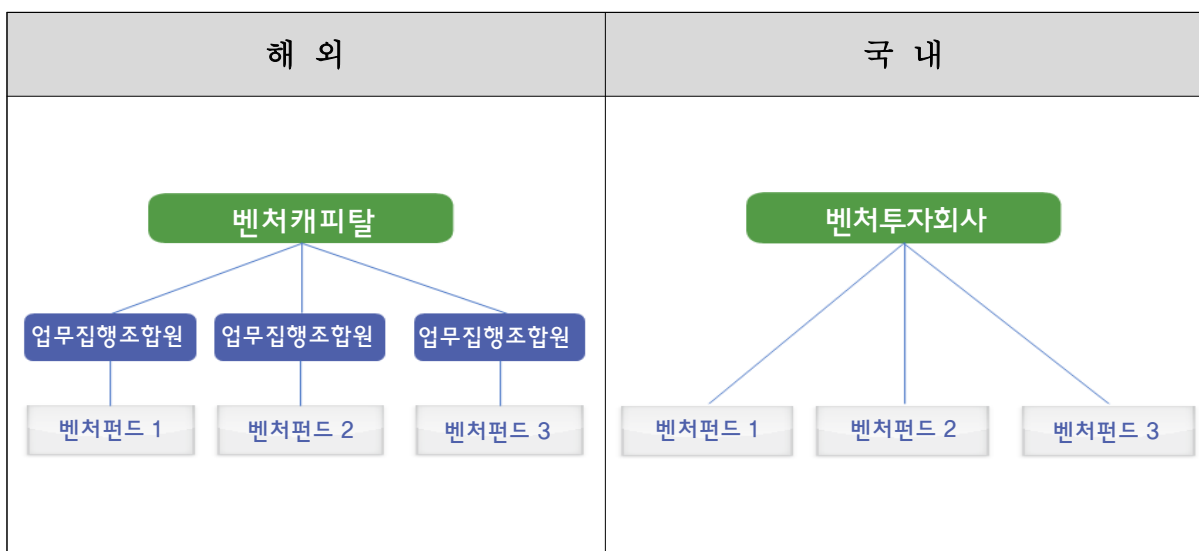
|  |                                                                                                                                               |
|--|-----------------------------------------------------------------------------------------------------------------------------------------------|
|  | <p><u>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u></p> <p><u>⑦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
|--|-----------------------------------------------------------------------------------------------------------------------------------------------|

안 제2조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회사”로 정의하고(안 제2조 제10호의2), 안 제37조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하려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1항제4호의2).

안 제38조의2는 운용전문회사가 1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펀드가 해산된 경우에만 펀드를 새로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용전문회사의 업무를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및 이에 딸린 사업으로 제시하고 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국내 벤처투자회사(이하 “VC”)는 모든 조합을 직접 결성하고 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이 되어 조합재산의 운용 및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로서 VC 1곳이 복수 펀드의 GP가 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VC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운용전문회사는 각각 1개 펀드의 GP를 맡게 되는 체계를 갖추게 됨.

### VC 운용체계 비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2025년 상반기 누적 기준 신규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5%, 19.4%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924억원 증가한 5조 6,780억원의 벤처투자와 1조 19억원 증가한 6조 1,681억원의 펀드결성이 이루어졌음.

## 2025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上    | '21.上    | '22.上    | '23.上    | '24.上    | '25.上    | 전년 비   |
|-----------|----------|----------|----------|----------|----------|----------|--------|
| 투자금액      | 31,710   | 65,725   | 76,442   | 44,930   | 54,856   | 56,780   | +3.5%  |
| 피투자기업 수*  | 1,489    | 2,163    | 2,305    | 1,831    | 2,382    | 1,901    | -20.2% |
| 기업당 평균투자액 | 21.3     | 30.4     | 33.2     | 24.5     | 23.0     | 29.9     | +29.7% |
| 구분        | '20 (전체) | '21 (전체) | '22 (전체) | '23 (전체) | '24 (전체) | '25 (전체) |        |
| 투자금액      | 80,962   | 159,371  | 124,706  | 109,133  | 119,457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상반기 국내 펀드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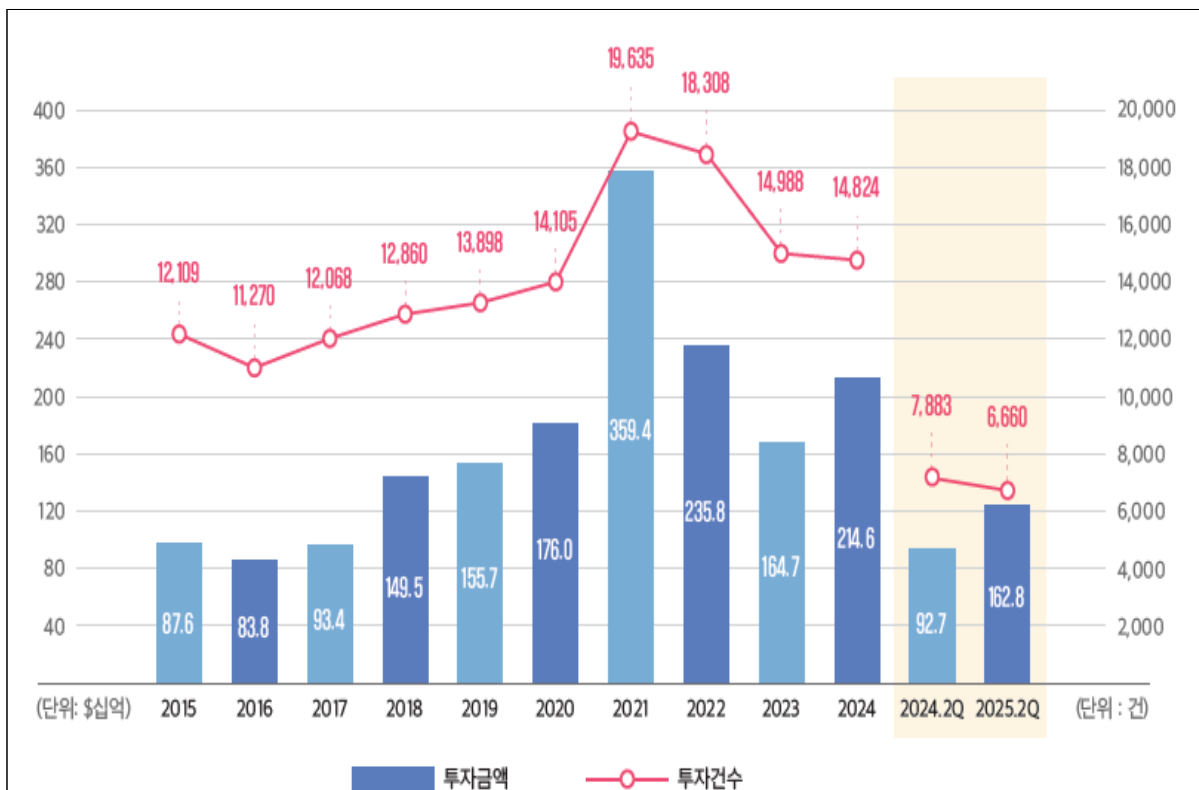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 '20.上    | '21.上    | '22.上    | '23.上    | '24.上    | '25.上    | 전년 비   |
|--------|----------|----------|----------|----------|----------|----------|--------|
| 결성금액   | 22,432   | 58,929   | 86,821   | 47,013   | 51,662   | 61,681   | +19.4% |
| 결성펀드 수 | 218      | 500      | 510      | 370      | 409      | 358      | -12.5% |
| 구분     | '20 (전체) | '21 (전체) | '22 (전체) | '23 (전체) | '24 (전체) | '25 (전체) |        |
| 결성금액   | 99,853   | 178,481  | 176,358  | 130,388  | 106,204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는 2025년 상반기 누적 기준 1,627.8억 달러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701억 달러(75.6%) 증가한 규모임.

### 2025년 상반기 미국 벤처투자 현황



자료: PitchBook-NVCA(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Venture Monitor

국내·외 벤처투자시장의 증가추세에 불구하고 국내 벤처펀드의 출자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는 2020년 0.9%에서 2024년 2.5%로 상승 후 다시 감소한 것임.

## 2025년 상반기 국내 펀드결성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                |    | '20.上  | '21.上  | '22.上  | '23.上  | '24.上  | '25.上  | 전년비     |
|------|----------------|----|--------|--------|--------|--------|--------|--------|---------|
| 정책금융 |                | 금액 | 5,012  | 10,886 | 10,803 | 6,751  | 9,232  | 9,935  | +7.6%   |
|      |                | 비중 | 22.3%  | 18.5%  | 12.4%  | 14.4%  | 17.9%  | 16.1%  |         |
|      | 모태펀드           | 금액 | 3,635  | 5,132  | 3,564  | 2,337  | 2,435  | 2,886  | +18.5%  |
|      |                | 비중 | 16.2%  | 8.7%   | 4.1%   | 5.0%   | 4.7%   | 4.7%   |         |
|      | 성장금융           | 금액 | 530    | 2,649  | 4,375  | 2,007  | 2,673  | 1,558  | -41.7%  |
|      |                | 비중 | 2.4%   | 4.5%   | 5.0%   | 4.3%   | 5.2%   | 2.5%   |         |
|      | 산업은행           | 금액 | 286    | 1,469  | 1,844  | 1,149  | 2,693  | 3,062  | +13.7%  |
|      |                | 비중 | 1.3%   | 2.5%   | 2.1%   | 2.4%   | 5.2%   | 5.0%   |         |
|      | 기타             | 금액 | 561    | 1,635  | 1,019  | 1,258  | 1,431  | 2,429  | +69.7%  |
|      |                | 비중 | 2.5%   | 2.8%   | 1.2%   | 2.7%   | 2.8%   | 3.9%   |         |
| 민간부문 |                | 금액 | 17,420 | 48,043 | 76,018 | 40,262 | 42,429 | 51,746 | +22.0%  |
|      |                | 비중 | 77.7%  | 81.5%  | 87.6%  | 85.6%  | 82.1%  | 83.9%  |         |
|      | 개인             | 금액 | 2,192  | 9,544  | 15,594 | 5,801  | 6,299  | 4,258  | -32.4%  |
|      |                | 비중 | 9.8%   | 16.2%  | 18.0%  | 12.3%  | 12.2%  | 6.9%   |         |
|      | 일반법인           | 금액 | 5,381  | 13,424 | 17,710 | 11,659 | 10,362 | 16,328 | +57.6%  |
|      |                | 비중 | 24.0%  | 22.8%  | 20.4%  | 24.8%  | 20.1%  | 26.5%  |         |
|      | 금융기관<br>(산은제외) | 금액 | 4,454  | 13,587 | 26,787 | 14,906 | 15,083 | 16,050 | +6.4%   |
|      |                | 비중 | 19.9%  | 23.1%  | 30.9%  | 31.7%  | 29.2%  | 26.0%  |         |
|      | 연기금 및<br>공제회   | 금액 | 1,745  | 3,104  | 4,795  | 1,076  | 2,530  | 5,820  | +130.0% |
|      |                | 비중 | 7.8%   | 5.3%   | 5.5%   | 2.3%   | 4.9%   | 9.4%   |         |
|      | VC             | 금액 | 3,033  | 7,325  | 9,157  | 5,476  | 6,006  | 6,915  | +15.1%  |
|      |                | 비중 | 13.5%  | 12.4%  | 10.5%  | 11.6%  | 11.6%  | 11.2%  |         |
|      | 외국인            | 금액 | 199    | 292    | 698    | 313    | 1,267  | 981    | -22.6%  |
|      |                | 비중 | 0.9%   | 0.5%   | 0.8%   | 0.7%   | 2.5%   | 1.6%   |         |
|      | 기타단체           | 금액 | 416    | 767    | 1,277  | 1,031  | 881    | 1,395  | +58.2%  |
|      |                | 비중 | 1.9%   | 1.3%   | 1.5%   | 2.2%   | 1.7%   | 2.3%   |         |
| 합계   |                |    | 22,432 | 58,929 | 86,821 | 47,013 | 51,662 | 61,681 | +19.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제도차이로 인해 해외투자자의 투자결정 시 국내 조합의 운용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점을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출자부진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해외에서 통용되는 펀드구조를 벤치마킹하여 해외 모험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모회사인 VC와 분리하여 투자기업 선별(Deal Sourcing), 계약체결, 투자회수 등 펀드운용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조합별 운용사의 독립적 성과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우수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연계 인센티브 설계와 저성과 조합에 대한 정리 및 자원 재배치가 용이해지고, 글로벌 VC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해외 LP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38조의2제1항은 이와 같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요건으로 ①벤처투자회사 및 소속 임직원 100%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일 것, ②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은 설립 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이 운용전문회사의 형태를 유한회사<sup>1)</sup> 또는 유한책임회사<sup>2)</sup>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sup>3)</sup> 대비 설립이 간편(주식 수, 액면가, 주

1) 「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 |                                         |
|-----------------------------------------|
| 1. 목적<br>2. 상호<br>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2)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 |                                                                       |
|-----------------------------------------------------------------------|
| 1. 목적<br>2. 상호<br>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br>5. 본점의 소재지<br>6. 정관의 작성년월일 |
|-----------------------------------------------------------------------|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 종류 등 설계 불요)하고 사원총회 등을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사회 및 주주총회 없음)이 가능한 점, 미국 등 해외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통용되는 GP가 대부분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라는 점<sup>4)</sup>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현행법 제50조<sup>5)</sup>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및 업무집행

- 4) An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often serves as the General Partner (“GP”) of the fund, and the Certificate of Formation is a critical document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this LLC. Without it, the GP LLC does not have a legal existence in the state of formation. The Certificate of Formation typically includes fundamental details about the GP LLC, such as its name,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gistered agent, and the purpose of the LLC. As one of the reasons an LLC structure is chosen for the GP is to offer liability protection to its members, and, by formally establishing the LLC, members of the GP (which could be individuals or other entities) are generally not personally liable for the LLC’s debts or liabilities.

- Tate-Di Donna, S., & Ogbechie Rust, K. 『The venture fund blueprint: How to access capital, achieve launch, and actualize growth (Part 1)』 . (2022).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조합원 자격으로 VC,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sup>6)</sup> 및 고시<sup>7)</sup>에서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일 것, 벤처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업무 종사경력 5년 이상 1명 및 3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일 것 또는 경력 5년 이상자 2명 이상일 것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전문인력 등 구체적 설립요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없다.

⑥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6)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7.>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가.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7)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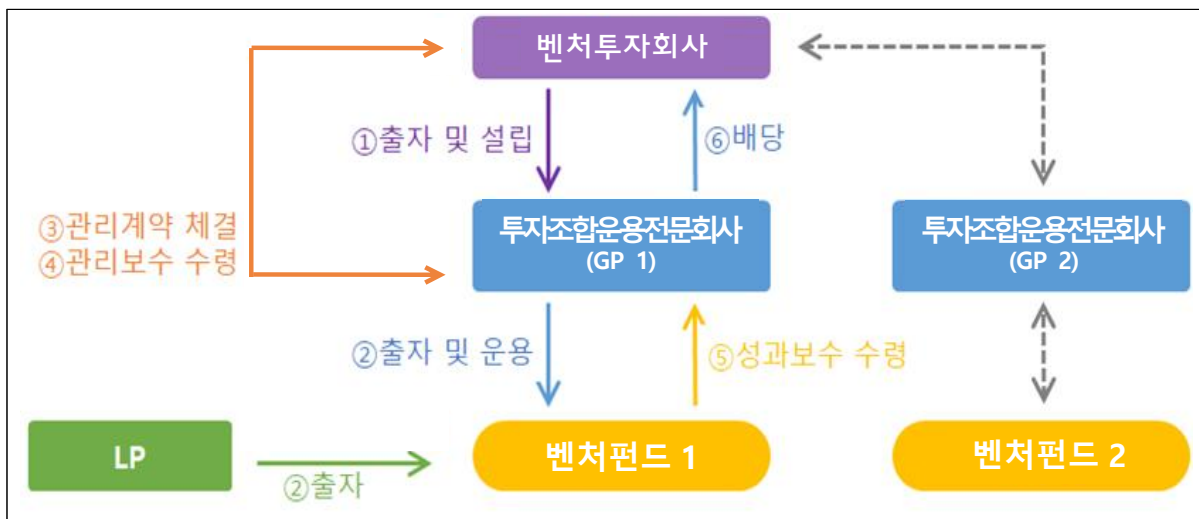
제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

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개정안에 따라 1개의 GP는 1개의 펀드만을 운용하는 펀드별 전담 운용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일 GP가 여러 펀드(또는 자기계정)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성과보수(Carry), 향후 투자모집(Fund Raising) 등에 유리한 펀드에 우량 딜을 우선 배정(Cherry Picking)하는 등의 VC-펀드-LP 간 이해상충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따른 VC 운용체계



안 제38조의2제6항은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사원총회 서면결의를 총사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상법」<sup>8)</sup>의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데 소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용전문회사의 특수성과 투자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

8)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로 이해되며, 안 제38조7항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한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준용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와 분리하여 투자기업 선별, 계약 체결, 회수 등 펀드 운용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신설 필요성이 있고, 그 형태를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두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소속 임직원의 책임과 권리 체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투자의무 및 업무위탁

(안 제3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51조제3항, 제52조제4항)

개정안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40%) 산정에 포함하고, 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br>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 |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 |

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  
가 운용 중인 출자산(자본금  
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  
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 <신 설>

-----총자산[자본  
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  
조합의 출자금액(투자조합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을 말한다]의-----

-----제4호의2,  
제6호-----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 2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                                                                                                                                                                                                                                                                                                                      |                                                                                                                                                                                                                                                                                                                                                                                                        |
|----------------------------------------------------------------------------------------------------------------------------------------------------------------------------------------------------------------------------------------------------------------------------------------------------------------------|--------------------------------------------------------------------------------------------------------------------------------------------------------------------------------------------------------------------------------------------------------------------------------------------------------------------------------------------------------------------------------------------------------|
| <p>3. ~ 7.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u>벤처투자회사</u>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용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p> <p>④ ~ ⑦ (생략)</p> <p>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 ③ (생략)</p> <p>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p> |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포함한다)</u>-----</p> <p>-----.</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인 <u>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u></p> |
|----------------------------------------------------------------------------------------------------------------------------------------------------------------------------------------------------------------------------------------------------------------------------------------------------------------------|--------------------------------------------------------------------------------------------------------------------------------------------------------------------------------------------------------------------------------------------------------------------------------------------------------------------------------------------------------------------------------------------------------|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VC 및 VC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운용·출자 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하는데<sup>9)10)</sup>,

안 제38조 및 제51조는 VC가 직접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VC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인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안 제52조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수행하는 GP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VC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소규모 VC의 경우 각 운용전문회사별로 법무·회계 처리나 전산 운영 등을 담당할 인력을 모두 갖추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10)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됨(2025.12.30. 개정, 2026.7.1.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의무 산정 시 벤처투자 회사의 투자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한 투자를 동일하게 간주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관리 업무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 허용하여 펀드의 운용과 관리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3.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요건 위반시 행정처분 등

(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제8호, 제72조제1항제4호의2, 제77조 및 제80조)

개정안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요건 또는 업무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VC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8호).

| 현행                                                                                                                                | 개정안                                                                        |
|-----------------------------------------------------------------------------------------------------------------------------------|----------------------------------------------------------------------------|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br>-----<br>-----<br>-----<br>-----<br>-----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6. · 7. (생략)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 ~ 7. (생략)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8.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또는 모태조합이 아닌 자는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

-----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 벤처투자조합-----

-----

-----

-----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

처투자조합-----

-----

-----.

제80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투

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투

자조합-----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sup>11)</sup>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VC가 ①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제3자 연대책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 제49조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요건 또는 업무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을 VC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음.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제37조제2항제2호 각 목(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벤처투자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8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1.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벤처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안 제49조제1항제8호에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GP로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운용전문회사가 아닌 VC를 등록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운용전문회사가 투자기업선별, 계약체결 등 펀드 운용업무 전담을 위해 VC가 출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책임을 VC에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됨<sup>12)</sup>.

다만, 개정안으로 설립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등 법인으로서는 「상법」 제287조의 2 및 제287조의 3<sup>13)</sup>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및 그 부수업무를 정관의 목적 사항에 기재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 「민법」 제34조<sup>14)</sup>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13) 「상법」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 |                                                                       |
|-----------------------------------------------------------------------|
| 1. 목적<br>2. 상호<br>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br>5. 본점의 소재지<br>6. 정관의 작성년월일 |
|-----------------------------------------------------------------------|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투자와 집행과정에서 범한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해 모회사인 VC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것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 벤처투자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 출자함으로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처투자회사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업무를 대신하는 자회사 설립요건 등 위반 시 벤처투자회사에 연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안 제72조는 VC, 벤처투자조합 등과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14)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안 제77조 및 제80조는 VC, 벤처투자조합 등과 동일하게 투자조합 운용전문회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4. 창업기획자 투자 의무 인정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

개정안은 설립후 4~5년차 창업기업 중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기업 및 기(既)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창업기획자 투자 의무(40%) 인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
|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u>초기창업기업에</u>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 ① -----<br>-----<br>-----<br>-----다<br><u>음 각 호의 창업기업에</u> -----<br>-----.<br>-----<br>-----<br>-----<br>----- |

|                                                                                                                                                         |                                                                                                                                                                                                                                                                                                       |
|---------------------------------------------------------------------------------------------------------------------------------------------------------|-------------------------------------------------------------------------------------------------------------------------------------------------------------------------------------------------------------------------------------------------------------------------------------------------------|
| <p>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③ (생 략)</p> | <p>-----</p> <p>-----</p> <p>-----</p> <p>-----.</p> <p>1. 초기창업기업</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p> <p>3.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초기창업기업에 후속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sup>15)</sup>에 투자해야 함<sup>16)17)</sup>.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창업기업의 4년 생존율은 40.9%, 5년 생존율은 34.7%로서, 상당수 기업이 창업초기인 3년을 지나 도약기 초반인 4~5년차에 초기자본금 소진 등으로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 64.9 | 53.6 | 46.9 | 40.9 | 34.7 | 31.0 | 27.8 |

자료: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창업 3년 이상 5년 이내 창업기업 중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기획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40% 투자의무비율로 산입하게 되면,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 본연의 업무가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이기에<sup>18)</sup> 현행법은 창업기획자

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17)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로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연장됨(2025.12.30. 개정, 2026.7.1. 시행)

투자대상을 초기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투자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2025년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전체 벤처투자 금액은 2022년 대비 9.3% 증가(12조 4,706억원→13조 6,244억원)한 반면,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8.8% 감소(7조 6,422억원→6조 2,088억원)하고 투자비중도 25.6%p 감소(61.3%→45.6%)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감소추세가 투자의무 완화에 따라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 구분        |     | 2022(A) | 2023    | 2024    | 2025(B) | 증감(B-A) |
|-----------|-----|---------|---------|---------|---------|---------|
| 초기(3년 이내) | 금 액 | 76,422  | 57,517  | 55,794  | 62,088  | △18.8%  |
|           | 비 중 | 61.3%   | 52.7%   | 46.7%   | 45.6%   | △25.6%  |
| 벤처투자 금액   |     | 124,706 | 109,133 | 119,457 | 136,244 | +9.3%   |

자료: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2.13.

####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업력 3년 이상의 창업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유치 이력이 없거나 후속투자인 경우 등을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5. 벤처투자모태조합 공시의무 부여(안 제70조의2)

개정안은 한국벤처투자예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결산서, 운용현황, 운용성과 등 자료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p><u>제70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u></li> <li><u>2. 모태조합의 운용 현황</u></li> <li><u>3. 모태조합의 운용 성과</u></li> <li><u>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영에 관한 자료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u></p> |

|  |                                                        |
|--|--------------------------------------------------------|
|  | <p><u>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
|--|--------------------------------------------------------|

현재 모태펀드 운용내역 공시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sup>19)</sup>에 따라 모태펀드 조성액, 출자자조합 규모 등 일부내용이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sup>20)</sup>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임.

개정안에 따라 모태펀드 결산서,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모태조합 운용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모태조합 공시 제도 도입은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9)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4조(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20) kvic.or.kr

## 6. 벤처펀드 출자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71조)

개정안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기존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출자대상에 창업기획자 운용 개인투자조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br>(생략)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br>(현행과 같음)                                                |
|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br>-----<br>-----<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4.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br>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현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sup>21)</sup>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개 지방정부 중 37.9%인 92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금설치 여부에 따라 벤처투자 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역 기반의 자율적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 광역시(시·도) | 기초(시·군·구) | 계      |
|-----------|----------|-----------|--------|
| 전체 지자체    | 17       | 226       | 243    |
| 기금 설치 지자체 | 15       | 77        | 92     |
| 기금 규모     | 34,724   | 5,768     | 40,492 |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행정안전부, 2025.6.

2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른 시·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사업일 것
    -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대상을 기존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운용)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5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실적을 보면 2022년 3,294억원에서 1,270억원 감소(△38.6%)한 2,024억원으로 확인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초기스타트업 전문보육기관인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지자체 출자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개인투자조합 결성실적

(단위: 억원)

| 2022  | 2023  | 2024  | 2025  |
|-------|-------|-------|-------|
| 3,294 | 2,371 | 2,526 | 2,024 |

자료: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2.1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벤처펀드 출자 근거 부재가 재정 투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지역 친화적인 벤처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59 |

## [참고자료]

### 1

###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개요

#### 1. 도입 배경

- 국내·외 제도차이로 비롯된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펀드 출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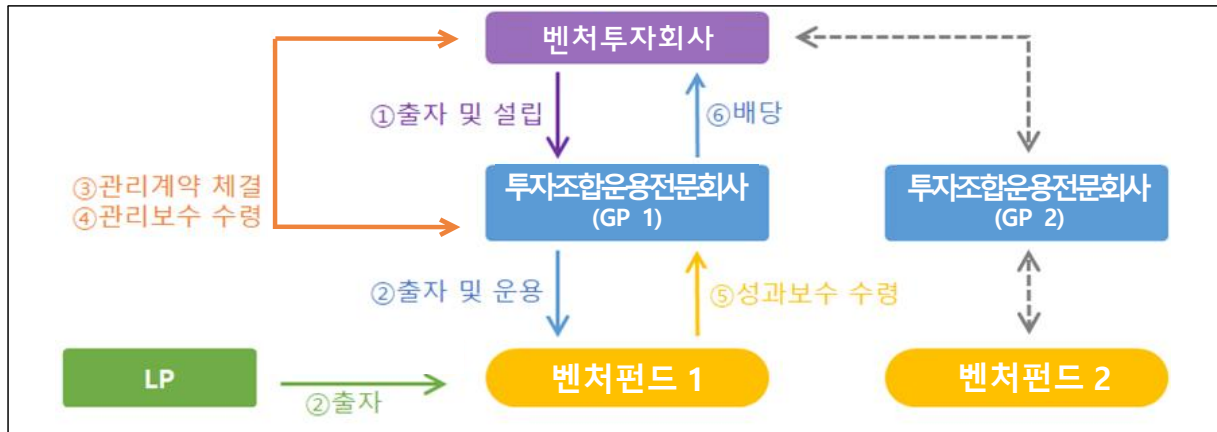
- \* (해외) 상위 회사가 설립한 GP는 1개의 펀드만을 운용하며, 상위 회사가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 수행
- (국내)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펀드의 GP는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며, 관리 업무 또한 동시에 수행



- 해외에서 통용되는 펀드 구조를 벤치마킹, 기존 제도와 병행 도입하여 VC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펀드 운용방식 제공

#### 2. 도입 방안 : 벤처투자법 개정

- (개요) 벤처펀드 결성주체인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로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펀드 운용과 관리를 분리



- (벤처투자회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펀드의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행정서류, 회계, 법률자문 등)를 수행
  - \* 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위탁업무 범위(투자업무 제외)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 계약 체결, 이익환수 등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
- (운용과정)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 → 펀드 결성 → 펀드 관리계약 체결(벤처투자회사-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 투자 및 관리 → 보수 지급 → 펀드 및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해산
- (회사 설립)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설립 시 벤처투자회사 및 운용인력의 출자만을 허용, 임원을 운용인력으로 구성
- (펀드 결성)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펀드 출자자(LP)를 모집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펀드를 결성,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의 역할 수행
- (관리계약 체결) 벤처투자회사는 펀드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
- (투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운용인력은 독립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 펀드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운용

- (청산) 펀드 운용기간 종료 후 펀드 청산까지 미치는 경우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또한 해산
- (수익구조) 성과보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출자한 운용인력 및 벤처투자회사에게 배분되며, 관리보수는 벤처투자회사가 수령
- \*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관을 통해 성과보수는 운용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배분

### 3. 기대효과

-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 투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 국내 벤처펀드 출자 용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활성화
- 운용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와 연동되므로 타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용전략 실행 등 책임 운용 강화

## 2

## 창업기획자 개요 및 현황

## 1. 창업기획자 제도 개요

- 스타트업이 초기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등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보육기관

## 2. 창업기획자 등록 및 운영 현황

- (등록) '25.12월말 기준 총 창업기획자 수는 501개사

(단위 : 개사)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계  | 358  | 417  | 461  | 482  | 501  |
| 신규 | 84   | 82   | 74   | 57   | 44   |
| 말소 | 35   | 23   | 30   | 34   | 25   |

- (보육) '17년~'25년 총 12,095개 보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경영 컨설팅, 특허등록, 전문가 네트워킹, 마케팅지원, 후속투자 유치 연계 등

- (투자) '25년 8,609억원 투자

- 이 중 초기창업기업 투자는 3,375억원으로 전체의 39.2% 차지

(단위 : 억원)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전체     | 9,282 | 10,692 | 7,390 | 8,514 | 8,609 |
| 초기창업기업 | 4,427 | 6,404  | 3,986 | 3,736 | 3,375 |

- (펀드) '25년 438개 조합, 9,683억원 결성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계      | 펀드수 | 365    | 405    | 379   | 422    | 438   |
|        | 결성액 | 14,449 | 15,929 | 7,477 | 11,092 | 9,683 |
| 개인투자조합 | 펀드수 | 291    | 329    | 310   | 342    | 351   |
|        | 결성액 | 2,782  | 3,294  | 2,371 | 2,526  | 2,024 |
| 벤처투자조합 | 펀드수 | 74     | 76     | 69    | 80     | 87    |
|        | 결성액 | 11,667 | 12,636 | 5,106 | 8,565  | 7,659 |

| 구분      | 조성액(백만원) | 구분      | 조성액(백만원) |
|---------|----------|---------|----------|
| 서울특별시   | 839,142  | 충청북도    | 139,956  |
| 중구      | 4,693    | 청주시     | 1,142    |
| 종로구     | 3,393    | 충주시     | 1,663    |
| 용인시     | 40,865   | 영동군     | 1,635    |
| 성남시     | 18,952   | 충청남도    | 70,092   |
| 광주시     | 10,722   | 천안시     | 3,000    |
| 대전시     | 6,065    | 공주시     | 700      |
| 충청남도    | 1,410    | 보령시     | 400      |
| 성북구     | 775      | 아산시     | 1,300    |
| 강릉시     | 3,671    | 서산시     | 400      |
| 도원시     | 4,136    | 노산시     | 800      |
| 노원시     | 11,828   | 계룡시     | 3,099    |
| 대문시     | 14,968   | 당진시     | 500      |
| 서대문구    | 10,049   | 부여군     | 300      |
| 마포구     | 5,239    | 서천군     | 300      |
| 양천구     | 3,954    | 청양군     | 200      |
| 강서구     | 18,612   | 태안군     | 200      |
| 구로구     | 2,404    | 전북특별자치도 | 221,377  |
| 영등포구    | 3,808    | 전주시     | 5,167    |
| 영등포구    | 22,860   | 군산시     | 9,500    |
| 관악구     | 15,395   | 정읍시     | 4,019    |
| 서초구     | 6,020    | 남원시     | 4,705    |
| 강남구     | 4,776    | 김제시     | 6,331    |
| 강동구     | 11,142   | 완주군     | 425      |
| 강동구     | 9,977    | 고창군     | 1,103    |
| 강동구     | 3,274    | 장수군     | 2,839    |
| 부산광역시   | 160,136  | 순창군     | 1,121    |
| 인천광역시   | 50,632   | 고창군     | 13       |
| 연수구     | 5,376    | 부안군     | 961      |
| 남동구     | 4,501    | 전라남도    | 328,164  |
| 부평구     | 8,115    | 목포시     | 6,191    |
| 계양구     | 10,634   | 여수시     | 2,592    |
| 대전광역시   | 65,794   | 순천시     | 2,914    |
| 울산광역시   | 72,693   | 영암군     | 4,204    |
| 세종특별자치시 | 3,301    | 경상북도    | 438,424  |
| 경기도     | 855,354  | 안동시     | 0        |
| 수원시     | 15,939   | 구미시     | 119      |
| 고양시     | 2,496    | 경상남도    | 344      |
| 안산시     | 101,038  | 창원시     | 28,597   |
| 남양주시    | 27,405   | 진주시     | 17,980   |
| 광명시     | 6,504    | 김해시     | 496      |
| 포천시     | 20,255   | 양산시     | 3,359    |
| 하남시     | 4,281    | 남해군     | 2,177    |
| 과천시     | 0        | 거창군     | 4,782    |
| 강원특별자치도 | 145,610  | 합천군     | 2,398    |
| 춘천시     | 3,653    | 제주특별자치도 | 81,394   |